

## 장학규정

제정	2002.03.01	개정	2004.03.01
개정	2010.07.01	개정	2012.09.10
개정	2013.05.01	개정	2013.07.23
개정	2013.12.04	개정	2015.06.24
개정	2016.01.11	전부개정	2016.05.12
개정	2016.11.03	개정	2017.08.14
		개정	2019.01.29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이라 한다)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학열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이 규정을 따르고, 외부 장학금의 경우 각 장학재단 및 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르되, 따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장학위원회)** 본 대학교의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**제4조(구성)**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학생지원처 직원으로 한다.

**제5조(임기)**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
2.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3. 장학제도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장학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관련사항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.<신설 2017.08.14>

**제8조(구분)**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**제9조(종류 및 선정기준)** 장학금의 종류 및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내장학금
  - 가. 성적우수장학금 : 당해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며, 학과·전공별 석차 순으로 지급한다.
  - 나. 입시관련장학금 : 본 대학교 입시전형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.
  - 다. 봉사장학금 :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.0 이상인 자로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하며, 총학생회, 대의원회, 학보사, 방송국 등 학생자치운영기구의 임원과 학생생활관 임원에게 지급한다.
  - 라. 근로장학금 : 학교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- 마. 보훈장학금 :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자녀로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- 바. 북한이탈주민장학금 :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에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- 사. 어울림장학금 : 본 대학교 각종 인성프로그램 및, 50세 이상 만학도 재학생, 자기개발 능력 우수학생등에게 지급한다.
- 아. 국제으뜸장학금(자격증, 표창) : 전공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및 어학성적 우수자, 정부기관주최 경진대회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.
- 자. 청운장학금 : 학생생활관 학생 중 입사생활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.<개정 2019.01.29>
- 차. 다문화장학금 : 다문화가족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.
- 카. 외국인유학생장학금 :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.
- 타. 교직원장학금 : 본교 재직 종인 교직원 또는 직계가족(배우자포함)이 본교에서 수학할 시 지급한다.
- 파. 생활복지장학금 :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곤란자, 본인 및 직계가족(배우자, 형제자매포함)중 장애 1~4급 장애인인 경우, 본 대학교에 형제, 자매 또는 직계가족(배우자포함)이 동시에 재학중인 경우 1인에게 지급한다.
- 하. 희망장학금 :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렵게 되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자
- 거. 특별장학금 : 전국 방송 언론매체를 통하여 학교의 명예 및 홍보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학생,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,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된 학생에게 지급한다.
- 너. 마일리지장학금 :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참여 및 기타 활동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를 일정 기준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.<신설 2019.01.29>
- 더.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장학금

2. 교외장학금 : 외부장학금으로 개인이나 각종 장학단체, 사회단체, 공·사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추천한다.

가. 학교에서 선발해야 할 경우에는 의뢰한 추천 요건을 기준으로 하며, 이외는 본 규정을 준용하되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나. 외부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.

**제10조(장학생의 배정)** 장학생의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.

**제11조(장학생 선발 및 확정)** 학생지원처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 장학예산에 의거하여 학과장 또는 해당부서장의 추천서를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각 학과별로 통보하고 공고한다.

**제12조(장학금의 확정)** 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총액 및 종류별 지급액과 선발인원 등 세부사항은 매 학기마다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13조(장학생 선발시기 및 지급방법)**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방법은 매 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4조(자격제한)**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.

1.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0 미만인 자. 다만, 성적우수장학금은 제외<개정 2019.01.29>
2.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. 다만, 성적우수장학금은 제외<개정 2017.08.14., 2019.01.29>
3.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(보훈장학금(본인)은 제외)<개정 2017.08.14>
4.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당시의 학기를 포함하여 두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

② 다만, 희망장학금, 특별장학금은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심의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이증수혜)** 장학금은 동일인이 당해 학기에 이증수혜가 가능하나, 수혜금액이 해당 학기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더한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근로장학금, 청운장학금, 특별장학금, 기타 총장이 정하는 장학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더한 총액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있다.

**제16조(장학금지급중지, 취소, 반환)**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하며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2. 휴학하는 경우(단, 선 감면 장학금으로 인한 이연 휴학할 경우 제외)
3. 제적된 경우(자퇴 포함)
4.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5. 장학금의 포기 또는 해임되었을 경우<개정 2017.08.14>
6. 반환 시 해당 학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기준을 따른다.

**제17조(장학생 교체)**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 받은 자 중 장학금의 지급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수혜대상자를 교체할 경우 추천 학과장 또는 부서장은 즉시 장학위원회에 서면으로 교체를 승인 받아야 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,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로 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